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5일 박민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8.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1. 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1.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민규의원)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은 교육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재의 제도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제도적으로 물가연동 등을 통해 주기

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가 하락되고 있기도 함. 더구나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양육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경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구 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고, 특히 개정안별로 지급 금액도 상이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아동 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검토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국고 보조율 확대 필요 등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